

## 행정사실무법(제4회)

1. 甲은 A행정청이 시행한 국가공무원시험의 1차 객관식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이하 ‘처분’이라 함)하였다. 이 시험은 1차 객관식시험, 2차 주관식시험, 3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고, 3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최종 합격자가 된다. 또한 3차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차 주관식시험에, 2차 주관식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차 객관식시험에 각각 합격하여야 한다. 甲은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2차 주관식시험 시행 전까지 재결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자 한다. 甲이 재결 전이라도 2차 주관식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논하시오. (40점)

2. 비송사건절차법상 재판의 방식과 고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3. B시의 X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인 甲 외 255명은 조합장의 배임행위를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장이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조합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비송사건인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절차에서 甲이 영업 중인 행정사 乙에게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하였다. 이에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진술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이 대리행위를 금지하고 퇴정을 명하였다. 법원의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0점)

4. 행정사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유형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 문제1.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

### 1. 문제의 소재

- ① 甲이 A행정청의 1차 객관식시험 불합격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행정심판법상 임시적 권리구제수단에는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이 있다.
- ② 이 사례에서 甲이 재결 전이라도 2차 주관식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甲이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구제수단에는 임시처분이 있다.
- ③ 이하에서 임시처분에 관하여 설명하겠다.

### 2. 임시처분

#### (1) 의의

임시처분이란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위원회)가 발하는 가구제 수단을 말한다.

#### (2) 요건

- ① 심판청구가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 ②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 ③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 ④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 (3) 절차

- ①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임시처분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임시처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 ④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

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임시처분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4) 취소

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한 후에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임시처분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5) 집행정지와의 관계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3. 결론

①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위원장도 잠정적으로 임시처분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이 사례에서 甲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위원회에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甲의 임시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다면, 甲은 2차 주관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문제2. 재판의 방식과 고지

### 1. 서설

비송사건이란 사권관계의 형성·변경·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 2. 재판의 방식

- ① 비송사건의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 ② 재판서에는 재판의 취지를 명기하여야 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이유의 기재를 요하는 것이 아니다.
- ③ 재판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적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을 갈음할 수 있다. 또한,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3. 재판의 고지

#### (1) 고지의 방법

- ①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고지를 하여야 한다.
- ② 비송사건절차법은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고지방식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 ③ 고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의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 (2) 고지의 상대방

- ① 재판의 고지는 재판을 받은 자에게 한다.
- ② 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에 의하여 자기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신청인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문제3. 법원의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이유

#### 1. 서설

- ① 임시총회 소집허가사건이란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청구 있는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하는 사건을 말한다.
- ② 비송사건에 있어서 대리가 허용된다.

#### 2. 비송사건의 대리

##### (1) 비송대리인

비송사건의 관계인은 소송능력자로 하여금 비송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으며, 소송능력자이면 아무런 제한 없이 비송사건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 (2) 비송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①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비송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법원이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한 경우에는 비송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 (3) 대리권의 증명

- ① 비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통상 위임장에 의하여 증명한다.
- ② 대리권의 증명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의 인증을 받도록 비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 (4) 대리행위의 효력

- ① 비송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비송행위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 ② 비송대리인으로서 비송행위를 한 자가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비송사건을 신청한 경우에 법원은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재판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항고할 수 있을 뿐이다.

3. 퇴정명령의 적법여부와 그 이유

- ① 행정사 乙이 비송사건의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라면, 법원의 퇴정명령은 적법하다
- ② 그 이유는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문제4.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유형 및 내용

##### 1. 서설

- ① 행정사법상 과태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
- ② 과태료는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다.

#####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자

- ① 행정사가 아니면서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 ② 행정사가 아니면서 행정사사무소나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감독상 필요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하거나, 출입·검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사람

##### 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자

- ① 업무처리부 작성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행정사
- ②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행정사
- ③ 사무소를 이전하고 10일 이내에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정사